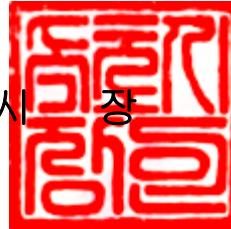


도문지구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

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「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「속초시 지적재조사(도문지구)사업」에 참여할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3년 8월 6일

속 초 시 장



1. 사업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속초시 지적재조사(도문지구)사업

나. 사업 시행기관명 : 속초시

다. 사업의 주요내용

○ 위 치 : 속초시 도문동 189번지 일원(186필 / 117,359㎡)

○ 세부내용 : 과업지시서 참조

라. 사 업 비 : 32,327천원(부가가치세 포함)

마.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2013년12월31일

바. 대행자 선정(예정)일 : 2013년 8월 23일 (※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)

2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안내

가.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참가자격

- (1)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
- (2)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
- (3) 공고일 전일부터 대행자 선정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인 업체

- (4) 본 용역은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)이 가능하며,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합니다.
- (5)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, 공동수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(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가능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단, 공동수급은 수급체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)

나. 참가등록 및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자료 제출

(1) 제출부수

-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2부(원본1부, 사본1부)
- 평가서 중 정성평가 항목인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계획서 9부
※ 2부는 위 평가서 원본에 제출하고 나머지 7부는 별첨으로 제출
- 공동수급 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

- (2)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속초시 민원봉사과(지적정보팀, 033-639-2727, 2726)로 문의

3. 대행자 평가 및 선정방법

가. 평가방법 : 「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23호)」에 따라 정량·정성평가 각 항목을 객관성 있게 평가함.

나. 대행자선정

- (1) 대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대행자로 선정함.
- (2) 동점자인 경우 평가항목 중 지적재조사측량·조사 대행계획서,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, 지적측량기술자, 측량장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※ 단, 1개의 지적측량수행자만이 단독으로 대행자 신청을 하였을 때는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음

다. 선정절차

추진 단계		단계별 내용
공고 및 접수	대행자선정 공고 및 접수	○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(10일간) ○ 지적재조사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제출서류 접수
평가	신청서 사전 검토	○ 신청서 사전 검토 - 사전 검토를 통해 자격 부적합, 구비서류 미비 신청인 등은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	서면 평가	○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: 속초시청(민원봉사과) 자체평가
	최종 선정	○ 속초시장
결과	대행자 통보	○ 선정기관 개별 통지
측량·조사 등 대행	서면의뢰 통보 또는 계약	○ 과업지시서 등
측량·조사 등 대행 고시	측량·조사 등 대행 고시	○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○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[별지 제8호서식]

4. 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13년 8월 6일 ~ 8월 16일(10일간)

나. 접 수 처 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

다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※ 우편접수의 경우 2013년 8월 1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라. 신청서류 : 붙임

※ 속초시 홈페이지(www.sokcho.gangwon.kr)서 다운받을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가. 참가등록을 한 대행자에 한하여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기한 내 평가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나.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(위임장 소지)이 인감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참가자격요건등록증 및 해당전문분야 자격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, 공동수급협정서(지분율 표기) 각1부(사본은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)

다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공개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,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.

라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마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사업비, 사업기간 등 과업내용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속초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(033-639-2727, 272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1부.
 2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1부.
 3.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대행 과업지시서 1부.
 4.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양식 1부.